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한기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38
----------	-------

발의연월일 : 2026. 4. 6.

발 의 자 : 허영·한기호·서삼석  
박용갑·김태호·고동진  
박정하·백종현·진성준  
박상혁·김영진·유상범  
임종득·김태선·이원택  
송기현·소병훈·김영환  
이철규·최혁진·유용원  
김도읍·김기현·이양수  
강선영·김성원·박수민  
강승규 의원(2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초광역권 통합을 위한 이른바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들이 국회에서 심사되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초광역통합·연합과 획기적인 권한 이양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음.

특히 초광역권 중심의 거대 경제권 형성이 가속화되고, 대규모 국세 이양과 규제 완화, 행정 권한의 대폭 확대가 병행되는 가운데, ‘5극·3

특 국가균형발전 체제'의 한 축인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역 경쟁력 약화와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의 소외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는 의료·바이오,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상 기업 유치, 산업 육성, 공공기관 이전, 재정지원 등 주요 분야에서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이전 시 강원특별자치도를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미래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와 재정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첨단의료 등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도약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주민자치 조직의 전문성 강화 및 사무국 설치)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사무국 또는 전담 사무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구성, 인력 운영 및 사무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군 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의3(도민 모니터링) ① 강원자치도의 도민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회의 입법과정과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의 정책 입안, 결정 및 집행과정 등을 감시·견제하기 위하여 그 활동 전반에 관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도민은 제1항의 모니터링 활동을 위하여 도민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모니터링 활동과 제2항의 도민모니터단의 구성과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시민은 제1항의 모니터링 활동을 위하여 시민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모니터링 활동과 제2항의 시민모니터단의 구성과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편 제3장에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혁신도시 개발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강원자치도의 혁신도시(「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를 말한다) 개발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 관할구역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다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의3(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강원자치도를 이전 대상지역으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강원자치도 관할구역 안에서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수당의 지급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 인재채용 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이를 상향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의4(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17조의5(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특례) ①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생활인구 중 도조례로 정하는 장기 생활인구(이하 “강원자치도 생활인구”라 한다)에 대하여 강원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등록할 수 있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현재 주민등록지
5. 통근·통학 등 정기적으로 방문·체류하는 사유
6. 정기적으로 체류하는 직장·학교 등에 관한 정보(소재지 등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원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등록·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강원자치도 생활인구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업무·고용 및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강원자치도 생활인구 등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편제4장에 제20조의2,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7조제1항 본문·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의3(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세 세율은 해당 세목 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34조, 제14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세율은 가감 조정할 수 없다.

제3편 제2장 제1절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강원과학기술원 설립)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강원과학기술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원과학기술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편 제2장 제1절에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2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그린바이오산업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례) ① 강원자치도에서 그린바이오산업의 연구·실증·산업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수행할 수 있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업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 수집, 보존 및 전송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공유, 공동 활용 및 거래
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플랫폼의 공동 활용 기반 구축
5.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데이터의 관리·활용을 함에 있어 국가 그린바이오산업 정책, 데이터 정책, 표준, 보안체계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의3(첨단바이오헬스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국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첨단바이오헬스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효율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예산의 집행, 인·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의4(수소제조설비 등 설치 특례) 강원자치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소저장소에 대한 구조 및 설치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의5(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① 국가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하고 강원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가 재생에너지 및 성장 유망산업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자립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에너지 자립도시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지능형 전력망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③ 도지사는 에너지 자립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의6(임대전용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에 지정되는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경우, 국가는 해당 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의7(산업단지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또는 산업단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기초시설 구축을 위하여 국가산단 등 산업단지의 부지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그 밖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환경기초시설을 산업단지 기반시설로 본다.

② 도지사 또는 산업단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단지 지정권자·관리권자와 협의하여 관리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의8(노후거점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지원 특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강원자치도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이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권자 및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우선하여 처리하거나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발전설비 등의 설치 및 구축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4조의9(벤처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강원자치도 소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벤처투자, 정책금융 및 보증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 정책목적형 펀드에 대한 출자
2. 중소기업 용자제도 우대 및 보증제도 수립·운영
3. 실증사업, 규제특례사업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한 사업화 투자 및 후속투자 지원

제34조의10(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특례)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거점, 기반시설, 재생에너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클러스터(이하 “클러스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클러스터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구축·확충 및 기능 고도화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2. NPU 등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시설 및 연계 시설

③ 국가는 제2항 각 호의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클러스터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연계된 전문인력 양성 및 글로벌 인재 유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클러스터 내 시설 구축, 기업 이전 등 관련 사업은 국가 인공지능 정책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보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를 의제 처리하거나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

제34조의11(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 ① 국가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술·실증 인프라가 집적된 강원자치도를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도민의 인공지능 접근성 제고 및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험·공공서비스 확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과 강원자치도를 연계하는 통합 교통·물류·정보통신·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의12(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도지사

가 「인공지능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에 대하여 인공지능집적단지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지사가 조성한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의 전담기관 지정 시 도지사가 추천한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하여 전력·용수 등 기반인프라 시설을 수요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의13(인공지능 및 반도체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및 반도체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 관할구역 내에 인공지능 및 반도체 도시 실증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증지구에서 인공지능 및 반도체 기술을

실증하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34조의14(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 활용의 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강원자치도 내 지역에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기술개발, 실증 및 사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역 내에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인공지능 학습·추론·검증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정제·결합·관리·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포함하는 공공 기반 데이터 관리·활용 플랫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축하고,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이 이를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인공지능데이터뱅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학습용·검증용 데이터의 구축 및 제공
2. 데이터의 비식별화, 익명화, 결합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 처리 및 관리

3. 인공지능 기술개발·실증·사업화를 위한 데이터 접근 및 활용 지원

4. 인공지능데이터의 품질 관리, 표준화 및 신뢰성 확보 지원

④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인공지능·데이터 정책 및 관련 사업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지역 내에서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연계·협력 방식으로 운영한다.

⑤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의15(인공지능·에너지 융합 특화산업도시의 연계 육성 및 지원)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인공지능 인프라와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문화 등에 전문화된 특화산업도시를 연계 육성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도모한다.

② 도지사는 첨단산업의 연계와 융복합 촉진을 위하여 3년마다 특

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특화산업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1. 첨단전략산업 분야 관련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집적되어 있거나 집적할 계획이 있을 것
2.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한 연구·실증·생산 인프라 및 기업 지원시설이 구축되어 있거나 구축할 계획이 있을 것
3. 특화산업 생태계의 상호 보완성 및 연계 효과가 인정될 것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우선 검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강원자치도는 제2항의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화산업도시 간 공동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의 기획·조정
2. 특화산업도시 간 인프라, 데이터, 자원의 공동 활용 체계 구축 및 공동활용 활성화
3. 기업 유치 및 투자 유치 통합 지원
4. 인력 양성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과 공동 홍보
5. 특화산업도시 간 교통의 연계

6. 그 밖에 특화산업도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4조의16(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군·구의 신청을 받아 강원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4조의17(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할 구역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신청하는 경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지역을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단지·지구·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의18(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

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의19(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도지사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우주산업의 육성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강원자치도 관할구역 내 우주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우주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자금 대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우주 국가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시설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국가와 협력하여 우주산업 정책을 연계하고, 강원자치도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지원하여야 한다.

제34조의20(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

청장은 도지사가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로 우선 지정하고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의21(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에 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과학기술 역량증진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회에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역조직 설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지역조직이 설립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조직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편 제2장 제2절에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의 체류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모두 해당하는 외국인 중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한 영주자격의 요건의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강원자치도에 있는 대학에서 첨단지식산업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할 것
2. 연구경력, 실적 등이 우수할 것
3. 강원자치도에 있는 연구기관·기업 등에 취업 또는 창업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첨단지식산업분야는 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례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마다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1항의 계속 적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계속 적용여부에 관한 결정을 따라야 한다.

제44조의3(다문화학생 등을 위한 지원) ① 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의 교육과정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른 다문화학생 등을 위한 교육과정·지역특화 교육과정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중학교 입학 전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촌학교 전·입학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④ 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병설하거나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특수학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학교를 병설하려는 경

우 학교의 규모 시설·설비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편 제3장에 제45조 중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를 ‘국가교육위원회와 미리 협의한 후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로 한다.

제3편 제3장에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초·중·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특례) ① 도교육감은 도내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는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학생의 선발기준 등을 달리하는 특별전형(特別銓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외국인학교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8조의 외국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은 제외한다)
4. 이 법의 외국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은 제외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에게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에게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활동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부모에게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편 제3장에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26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국제학교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글로벌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1. 국가, 강원자치도 또는 시·군
2. 국내 법령 또는 외국 법령(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국제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8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의4(국제학교 설립계획의 승인) ① 제48조의2제1항제1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갖추어 설립계획에 대하여 도교육감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48조의2제1항제2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설립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국제학교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받은 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주요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의5(국제학교의 설립승인 등) ① 제48조의4에 따라 설립계획을 협의 또는 승인받은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교육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제학교의 설립·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주요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학교의 설립 및 변경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8조의6(국제학교의 위탁운영 등) ① 제48조의2제1항제1호의 자는 설립한 국제학교의 운영을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같은 항 제2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국제학교는 국제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로 본다.

② 제48조의5제1항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승인을 받은 법인(이하 “국제학교법인”이라 한다)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운영을 제48조의2제1항제2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제학교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제48조의7(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① 국제학교법인은 설립승인을 받은 국제학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승인일부터 3주 안에 「민법」 제50조에 따른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8조의8(국제학교의 운영 등) ①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하되, 국어 교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입학하는 외국인에게는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제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학년도,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등 수업에 관한 사항

2. 학년제, 수업연한 등에 관한 사항

3. 국제학교의 교과용 도서 사용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입학자격, 입학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국제학교의 학교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의 평가, 평가의 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인 국공립 국제학교의 수업료에 관한 사항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다.

⑤ 국제학교의 장은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수학(受學)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해당 학교 과정에 입학(재입학·전학·편입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⑥ 국제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⑦ 국제학교의 학생은 국제학교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의9(다른 법률의 적용) ①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기록, 학생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5조제1항 및 제30조의6을 적

용한다. 다만, 학생생활기록의 구체적인 작성과 그 방법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에 알맞은 방법으로 학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법」 제31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라 휴업명령·휴원처분 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제48조의10(국제학교의 교원임용 등) ①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의 자격과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제학교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이 설립·운영하는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임면, 복무, 신분보장·사회보장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54조의2,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4까지 및 제70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에게는 같은 법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학교는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국공립 국제학교의 교원에 한정한다)

의 보수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35조 각 호의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국공립 국제학교의 장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국제학교 운  
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5  
조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국제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특별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국제학교의 장은 내국인 교원과 외국인 교원 간에 합리적인 이  
유 없이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의11(국제학교의 회계처리 등) ① 국제학교의 회계는 학교에 속  
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회계기  
준 등에 따라 처리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처리는 그 법  
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을 따른다.

③ 국제학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목적을 위  
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④ 국제학교법인의 기관과 해산·합병은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  
는 법령에 따른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국제학교  
법인의 기관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  
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제48조의12(「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국제학교의 지도·감독, 재정지원 및 이에 따른 조치, 국제학교의 폐쇄승인 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학교법인”은 “국제학교법인”으로, “외국교육기관”은 “국제학교”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국제학교의 장”으로, “교육부장관”은 “도교육감”으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학과”는 “학교”로 본다.

제48조의13(국제학교 학생 선발의 특례 등) ① 국제학교의 장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대상자를 입학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도조례로 정한다.

제48조의14(국제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제학교의 장은 국제학교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또는 수업료 감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방안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8조의15(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 ① 국가와 강원자치도는 지역산업과 연계된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수 인력의 유입 및 체류 지원을 위하여 주거, 교육, 문화 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의16(지역전략산업 분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인공지능, 미래 모빌리티 등 지역의 특화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내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정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학교의 지정 또는 운영에 관한 특례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지역 특화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역전략산업 분야 특화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

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교육감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④ 도지사 와 도교육감은 지역전략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 및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자치도 관할 구역에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공동으로 입주할 수 있는 교육·연구 복합시설 및 캠퍼스(이하 “지역산업혁신 캠퍼스”라 한다)를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⑤ 도지사 와 도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지역산업혁신 캠퍼스의 조성·운영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대학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 운영,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학교 특례 운영 요청, 대학 및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운영, 관계 기관 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17(대학 경쟁력 강화) 강원자치도 내 대학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활성화 및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초·중등학교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48조의18(학생 모집정원에 관한 특례) ① 도교육감은 강원자치도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정원을 정함에 있어 지역의 인구변동, 산업 수요,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 모집정원 운영을 위하여 매년 학생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 모집정원의 탄력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의19(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구조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조개선 명령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8조의20(대학 주도 평생교육·직업교육 특례) 도지사·도교육감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대학, 산업계, 관계 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정책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8조의21(대학 및 지역 동반성장 지원 특례)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 설치 및 운영에 따라 대학의 교육·연구·산학협력 기능이 지역 발전과 연계·확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 전략산업, 초광역 협력사업 및 국가 정책사업과 연계된 고등교육 혁신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48조의22(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특례) ① 도지사는 소외된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지방공기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지역 전략산업에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학력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의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확충
2. 고등학교 졸업자 맞춤형 고용 지원 및 채용 확대
3. 능력 중심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4.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후 경력개발 지원

②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5.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강원자치도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지역 전략산업 소속 기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자치도 관할구역에 조성된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업

4. 그 밖에 강원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용 노력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졸업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일부 지원

2. 직업훈련 및 자격취득 비용 지원

3.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

4. 강원자치도 공공조달 입찰 시 가점 부여

5. 그 밖에 강원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지원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용 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기업을 포상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역량 강화 및 직장 적응 지원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현장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취업 후 계속교육 및 학위취득 지원
3. 직장 내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고등학교-기업 간 채용연계 협약 체결 지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8조의23(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 글로벌 인재 유치 지원)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공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국제행사 개최
2. 해외 현지 취업박람회 및 정부 간 협력 등을 위한 사절단 등의 운영
3.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예산 및 지원인력의 확보
4. 그 밖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범정부 협력 지원 활동

② 강원자치도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취업과 연계한 교육훈련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지역 내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3. 그 밖에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제48조의24(인재 고용 지원 및 촉진) ① 도지사는 미래신산업 분야의 인재 유입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대학·연구소와 기업 간의 채용 연계형 인턴십 및 현장 실습 프로그램 운영
2. 미래신산업 분야 취업 희망자에 대한 맞춤형 직업 훈련, 경력 설계 컨설팅 및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
3. 지역 인재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임금 보조 또는 사회보험료 지원
4. 그 밖에 인재의 고용 촉진 및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이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나 공사·물품 구매입찰 하는 경우 지역 내 미래신산업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8조의25(우수 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 ① 도지사는 미래신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 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핵심 인재에 대하여 일정 기간 무상 임대하는 등 주거비 지원정책을 시행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지원 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의26(우수 인재 정주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 도지사와 도 교육감은 미래신산업단지 또는 연구개발특구 인근에 우수 학교를 유치하거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편 제1장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장 농업·식품산업·임업·수산업 등 진흥

제51조의2·제51조의3까·제56조의2 및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3

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제51조의3(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동물보호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물의 보호·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2. 인증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
3.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자문 및 관촉
4.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해외시장의 진출·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홍보활동 및 투자유치
5. 그 밖에 인증농장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56조의2(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특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자체적으로 국가 지정 수준에 준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7조의2(수산물발전기금 지원 특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

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 유통 발전 협의회를 통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기금운용 시, 강원 자치도 수산업의 지속적인 영위와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 적체물량 해소 및 가격안정을 위한 수산물 정부 비축·수매 자금 지원
2. 수산물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지원
3. 그 밖에 어업인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7조의3(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고, 선도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보에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도지구 지정 및 선도지구 조성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선도지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선도지구를 지정한 경우 수산업 기반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 수산업 관련 연구개발, 스마트 수산업 교육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7조의4(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특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40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할구역 내의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57조의5(해양공간관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특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 용도 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강원자치도 관할 해역에 한하여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57조의6(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① 「연안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5조,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 제28조제3항,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심의는 하지 아니한다.

② 「연안관리법」 제5조제6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제4호, 같은 조제5항, 제25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단서, 제33조제2항, 제34조제4항,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의7(국가어항 지정 및 시행에 관한 특례) 도지사가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어항의 신규 지정을 요청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개발할 수 있다.

제57조의8(지방어항 지원에 관한 특례) 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지방어항에 대하여 국가 등이 계획하는 해양수산 정책 등 연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상어항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7조의9(섬 주민 물류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강원자치도 관내 섬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7조의10(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및 해양에너지 수익의 주민배당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갯벌·해조류 등 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사업과 해상풍력 등 해양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연계하여 그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전력 판매 수익금 또는 탄소배출권 거래 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게 정기적인 이익배당금(이하 이 조에서 “바다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바다연금의 안정적인 재원 조성을 위하여 발전사업자, 탄소흡수원 인증사업자, 주민 조합 등이 참여하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바다연금의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지급액 및 주민 참여 비율 등 세부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제57조의11(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기 전에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지역의 산업 발전계획, 어업권의 손실보상 및 지역주민 수용성, 환경·경관적 특성 등을 반영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7조의12(해상풍력 발전지구 내 면허어업 및 어업허가 특례) ① 도지사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산업과의 상생공존을 위하여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지정된 공유수면에서 「양식산업발전법」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설치·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양식업(면허에 한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 공유수면에서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식업 및 어선어업의 허용 기준, 대상 해역, 어업의 종류, 안전관리 및 조업 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의13(항만지정 및 개발 특례) ① 도지사는 「항만법」 제3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항만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항만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항만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항만시설 수급전망, 항만물동량 수요 예측 등 급격한 경제상황 변동이 있거나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관리·운영 등이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신속히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지구·발전지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강원자치도 내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

조에 따라 해상풍력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57조의14(수상태양광 산업 육성) ① 국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수상태양광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수상태양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실증사업, 사업화 지원, 전력계통 연계 제도 개선 및 관련 인허가 절차의 합리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상태양광 등을 추진할 때 지역주민의 참여와 수익의 일부가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57조의15(수상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특례) ① 도지사는 댐 구역, 저수지 및 담수호 등의 수면에 부유(浮遊)하여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이하 “수상형 태양광 발전설비”라 한다)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지 및 설치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경관 보호에 관한 사항

2.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부합하는 설비의 안전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 및 안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기준에 적합하게 수상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신고·해제(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제57조의16(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및 제23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산업법」 제46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어업(근해어업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산업법」 제46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어업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의17(낙시어선의 이용에 관한 특례)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제4항, 제38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

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의18(유어장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8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른 유어장(遊漁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어장의 일부를 유어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기준,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수량 및 유어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유어장을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편 제1장에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선박등록특구의 지정) ① 국가는 선박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강원자치도 내 무역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한다.

②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된 선박으로서 제1항에 따른 무역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 및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강원자치도는 제1항에 따라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국세 및 지방세 관계법령과 지방세 감면 등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여야 한다.

④ 선박등록특구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3(글로벌 물류경쟁력 확보 시책수립 등) ① 정부는 강원자치도가 복합물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운·항공·도로 간 물류체계를 효율적·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국내·외 물류체계 및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활동의 촉진, 제조·유통산업 등과의 연계강화 등 글로벌 물류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8조의4(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국제물류진흥

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일정지역을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을 요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강원자치도의 공항·항만과 그 배후지에 대한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공항·항만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국제물류진흥지역 내에서의 관세절차 및 신속한 환적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용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58조의5(지방관리항만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가 관리하는 지방관리항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7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역균형발전, 도서·벽지 주민의 교통·물류 편의 증진에 기여

하는 경우

2. 해상풍력 등 국가 대규모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형 재난 발생에 대한 복구 및 회복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항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의 대상, 비율,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6(자유무역지역 연계 항만배후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제58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지정하는 자유무역지역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는 해수부장관에게 「항만법」 제45의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타당성과 발전가능성, 지역 특수성과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58조의7(외국인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특례)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농어업 및 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의 계획에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환경 및 주거 여건 실태 조사
2.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3.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의료 지원 및 자녀 보육·교육 지원 방안

② 도지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전용 기숙사 또는 공동 숙소를 건립하거나 개량·보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강원자치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 및 체류 자격 변경 요건의 완화

2.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 및 재입국 절차의 간소화

3. 강원자치도 내 특정 구역 또는 산업 분야에 한정하여 취업 활동을 허가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의 쿼터 확대

④ 도지사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언어 소통 및 갈등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의 교류 활성화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8조의8(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① 강원자치도는 정책펀드의 기획·운용, 공공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개발, 전략사업에 대한 투자 등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출자하여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강원자치도는 지방소멸대응, 지역혁신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고 출자할 수 있다.

제58조의9(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는 강원자치도 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특구 및 도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국가 지원 한도와 분담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제58조의10(기회발전특구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지사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강원자치도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8조의11(산업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강원자치도 내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

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8조의12(지능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3조제1항·제4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선도사업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경우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거점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8조의13(기업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연대협력체 구축 특례) ①

도지사는 지역 전략산업의 연대·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업연대협력체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합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 연구개발(R&D), 핵심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상호 공유·활용
2. 생산시설·장비의 공동 투자·이용 및 부품·원자재의 상호 수급 체계 구축
3. 공동 브랜드 개발, 온라인·오프라인 판로 개척 및 공동 마케팅·인증 획득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산업연대협력체를 지정하여 통합 지원하는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산업연대협력체의 신청, 지정, 인센티브 제공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단일 창구에서 일괄 처리하며, 정부는 관련 인허가 및 규제 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의14(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58조의15(중소기업 종사자 공동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정부와 도지사는 중소기업 종사자의 복지 향상 및 지역 인재 유치·정착을 위하여 지역기업, 소상공인, 서비스업체 등이 참여하는 광역 단위 공동복지사업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동복지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동복지사업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카드를 발행·운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동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강원자치도 중소기업 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8조의16(소상공인에 대한 국가 종합지원 특례)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 설치로 인하여 경영환경의 변화, 상권 구조의 재편 및 지역 간 경제여건 격차 등으로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기존 소상공인 지원제도와 연계 범위 내에서 금융적·정책적 지원 특례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 및 같은 조 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  
심지역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3. 소상공인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제 취약지역

④ 국가는 강원자치도 설치 이전과 비교하여 소상공인의 금융·경  
영 여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노  
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는 강원자치도 지역 내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  
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유통·할인지원 등 소상공  
인 지원사업을 확대·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  
체 간 역할 분담에 따라 추진하며, 필요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58조의17(지역역세권 활성화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는  
역사와 역사주변지역을 연계하여 역사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경  
제활동 및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철도사업자(「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를 말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철도경제권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강원자치도 및 철도사업자는 철도경제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복합 환승센터구축을 요청하는 경우 기본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기후위기적응센터(이하 “적응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적응센터는 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③ 도지사는 적응센터에 대하여 수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도지사는 적응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1조의3(탄소중립 지원센터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기후위

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지정·운영 중인 종전의 강원자치도 관할 내의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1조의4(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 ① 강원자치도는 정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이하 “특별지구”라 한다)로 지정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지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된 지역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3. 그 밖에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지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② 강원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구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국가는 특별지구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1조의5(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지상설치 지원)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강원자치도 관할구역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8조의2부터 제6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댐수입금 등의 공개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에 건설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에게 해당 다목적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수입금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댐사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사용권자인 경

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징수한 사용료

2.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용료

3. 발전판매(發電販賣) 수입금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 등의 자료 제출의 방법, 시기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3(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등의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건설된 총저수량 10억톤 이상의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댐사용권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재원과 별도로 해당 다목적댐에서 발생하는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및 전전년도 생활용수·공업용수 판매를 통한 수입금의 100분의 20을 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에 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을 조례로 설치·운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해당 다목적댐 주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2. 그 밖에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도

지사가 정하는 사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 지원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68조의4(오염총량관리제 지역개발부하량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수립·승인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지역개발계획부하량의 지역개발사업별 할당 시 지역개발사업의 승인·허가 등의 기관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협의하는 대상사업은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정한다.

제4편에 제4장(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1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장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의 진흥

제73조의2(문화예술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
2.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확충·정비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개발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예술의 발굴·진흥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의 교류증진과 세계화에 관한 사항
7.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8.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에 따른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가는 강원자치도 문화의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진흥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진흥계획 중 제2항제7호에 따른 사항이 반영된 부분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73조의3(지역문화 진흥거점 조성)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13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3조의4(문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이 집적된 지역
2. 군사시설 이전이 확정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내 교양시설이 설치된 지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3조의5(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평가 특례) ①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의2에도 불구하고 설립·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토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3조의6(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객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특구 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3조의7(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향토문화의 발굴·유지·보존 및 계승·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강원자치도는 향토문화관광지구 조성을 위한 도로·용수시설·하수시설·통신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73조의8(문화·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국제회의시설·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대규모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문화·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3조의9(세계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국가는 강원자치도가 세계 한류 역사문화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3조의10(역사문화특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역사적 정체성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역사문화거점으로서 강원자치도 내 일정 지역을 역사문화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특구를 지정할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역사문화특구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국가유산 및 전통문화의 체계적 보존·전승
2. 역사문화 자산과 그 정신적 가치의 보호 및 활용
3. 무형유산·전통예술·민속문화의 집적 및 활성화
4. 역사문화 기반 관광·교육·연구 기능의 강화

④ 역사문화특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3조의11(역사문화특구에 대한 특례) ① 강원자치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특구의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 자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강원자치도는 역사문화특구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익계약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역사문화특구에 적용되는 특례의 범위와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12(인공지능-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에 과학기술·디자인·문화예술·인문사회 등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복합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단지 내에 차세대 이동통신망, 초고성능 컴퓨팅 센터, 인공지능 창작 전용 데이터센터 등 차세대 디지털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단지에는 실감형 콘텐츠,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 게임, 영상, 웹툰, 애니메이션, 미래형 문화기술 관련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개발하는 인공지능 융합 콘텐츠 서비스에 대하여 실증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문화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3조의13(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 특례) ① 도지사는 콘텐츠 산업 육성과 국제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및 건폐율·용적률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한류 콘텐츠 복합 공연시설 등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립 등에 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 영상 제작 시설 등 문화산업 관련 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건립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는 해당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단위개발사업지구로 보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사업시행자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제73조의14(연안 관광개발을 위한 환경 규제 특례) ① 도지사는 연안의 고유한 생태·문화를 활용한 관광 개발을 위하여 친환경 관광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 관광 진흥지구 내 개발 사업의 환경성 및 국가유산 사전영향협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 이익의 일정 비율을 환경 복원 및 생태계 보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4편에 제5장(제73조의15부터 제73조의6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장 생활환경 개선 및 경제 진흥 등

제73조의15(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강원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도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73조의16(공공의료재단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에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및 취약지역

의료 접근성의 실질적인 개선과, 필수·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지속적 공급 체계 구축하는 등 광역 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 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의료재단 설치·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공공의료재단의 설치, 조직 및 운영, 관련 민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3조의17(공공산후조리원 조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관할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출산율 제고와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강원자치도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시설 확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위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3조의18(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강원자치도 관할구역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응급의료 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 지원
3. 응급의료 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 지원

#### 4.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구축 및 운영 지원

제73조의19(공공의료 인프라등 확충에 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공공의료 인프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인력·사업을 말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책임의료기관과 그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연계체계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축·증축·이전, 노후시설 개보수 및 의료환경 개선 사업
3.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중증·응급·분만·소아·정신 의료 등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권역별 전문의료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재난·응급 의료, 필수의료 제공,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병원 및 관련 기반시설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안정화 및 장비·인력 확충 기반 사업
6.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장기 근무 유도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교육·연구·생

## 활기반 등 지원 사업

7. 「병역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료취약지에 편입·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 인력
8.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도내 소재 지역암센터의 시설·설비 등의 설치·확충, 증축·개축, 리모델링 등
  - ②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의료 인프라등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책임의료기관의 기능 강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취약지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도내 관할 지역에 제공되던 응급·필수·공공 의료 관련 국가의 재정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국가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⑥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의료취약지의 병원 운영비 지원과 지역 의사·필수 의료인력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⑦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11조

의2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와 법인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종합병원 개설과 연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73조의20(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 ① 강원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필수의료복지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의료원은 제1항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료원은 업무·고용 또는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기부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그 밖에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21(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73조의20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73조의20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22(인공지능 약자 보호 및 교육) ① 국가는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음성, 동작, 뇌파 등으로 제어 가능한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인공지능 인터페이스를 보급할 수 있다.

② 강원자치도 내 모든 공공시설과 대중교통에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수어 통역 및 시각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73조의23(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경찰관서, 교육기관 및 관련 민간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조직, 인력 운영 및 유관 기관 간 협력 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3조의24(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특례)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특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 지원, 행정 지원 및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73조의25(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출산장려 및 인구 부양, 돌봄 등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제도의 신설이나 변경에 대한 협의절차 간소화를 요청할 수 있다.

제73조의26(강원자치도 돌봄특구 지정) ① 도지사는 영유아 및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돌봄을 위한 강원자치도 돌봄특구(이하 “돌봄특구”라고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돌봄특구 내에서 시행되는 돌봄사업과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돌봄 간의 연계·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돌봄특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돌봄특구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④ 도지사는 기존 돌봄사업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돌봄특구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3조의27(특화형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1인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청년층, 장애인, 고령자 등 입주자의 특성 및 주거 수요에 대한 맞춤형 공간구성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에 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이하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를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그 밖에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국민의 복리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임대조건,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기준, 운영기관의 선정·평가 및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국토교

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3조의28(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3조의29(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지사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력(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포함한다)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폐수·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연결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5. 그 밖에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73조의30(반도체·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에 반도체 및 방위산업과 연계한 신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반도체, 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강원자치도가 반도체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반도체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내 관할구역에 소재한 연구기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3조의31(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 ① 국가 및 도지사는 국방특화 클러스터의 확대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방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자금대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국방특화 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국방산업 정책을 연계하고, 강원자치도의 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지원하여야 한다.

제73조의32(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1. 강원자치도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강원자치도 푸드테크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발전 전망
  3. 강원자치도 푸드테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4. 강원자치도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5. 강원자치도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강원자치도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창업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7. 그 밖에 강원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도지사는 매년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3조의33(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정) 국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8호 및 제14조에 따른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강원자치도에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73조34(푸드테크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관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3조35(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정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73조36(푸드테크산업 규제개선 특례)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3조의37(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내 관할구역 내 농업의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이 조에서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하거나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지사”로,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 본다.

③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9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육성지구를 지정 한 경우 농업기반 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개발, 스마트농업 교육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3조의38(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 치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을 제안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을 할 때 해양치 유산업의 광역적 연계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지역이나 복수의 지역을 하나의 해양치유지구로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복수의 지역이 하나의 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 지사는 각 지역별 자원 특성을 고려한 기능 분담 및 연계개발 계획 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3조의39(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제12호에 따 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 농수산물공판장(이 하 “공판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

터”라 한다)의 선진화 및 지역별 유통망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내 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강원자치도의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사용료
3. 기타 기부금 및 후원금 등

③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도매시장, 공판장 및 종합유통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정책 및 지원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3조의40(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 조성 특례)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하여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를 지정 및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및 지원을 총괄하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3조의41(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농촌관광자원, 해양관광자원 등 특화 관광자원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관광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유원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단지 조성사업을 인구감소지역 내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42(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 도지사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 및 조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분석·검토한 후 추진할 수 있다.

제73조의4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치유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지사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3조의44(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국가의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와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도내 일정지역을 강소형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이 조에서 ‘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라 한다) 조성할 수 있다.

1. 우수 연구인력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定住) 가능성
2.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의료기관의 집적·연계 정도
3. 도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협력 정도
4. 부지 확보의 용이성, 접근성
5. 첨단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
6. 도내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또는 해외수출 실적 등
7. 지역에 조성된 바이오, 의료산업 기반 및 인프라 구축 정도
8. 첨단의료복합단지로서의 발전가능성
9.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개발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의 기본 방향과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첨단의료산업진흥지원조직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의료연구개발기관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의료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7.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성과의 활용 및 전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의료연구개발 활성화 및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과 규제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를 적용한다.

④ 국가와 강원자치도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3조의45(혁신형 의료기기 지원 특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3조의46(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기준 등에 관한 특례) ①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강원자치도 내에서 발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도지사는 계약처리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 자격 기준 등의 적용을 달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정책사업 중 지방비 투입사업

2.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3.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 지역발전에 기여 등 지역의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 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등을 달리 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계약의 종류, 목적물, 사업명, 장소, 사업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강원자치도와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처리의 기준과 입찰참가 자격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하여 제76조의 발전협의회에서 미리 협의를 할 수 있다.

제73조의47(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에 관한 특례) ① 국가와 강원자치도는 「약사법」 제44조의2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약사법」 제4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경영할 것
2. 6시부터 24시까지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출 것
3. 「약사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할 것
4.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위해(危害)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제73조의48(창업 집적 시범지구의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창업 생태계활성화 및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 집적 시범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창업 집적 시범지구 내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3조의49(미래산업 산학협력 촉진)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 산업기술발전, 인재 양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업계와 대학 간의 협력(이하 “산학협력”이라 한다)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학협력 등을 영위하는 기관과 그 지원 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였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산학협력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

거나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산학협력 선도지구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②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학협력 선도지구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2.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3.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4.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5. 그 밖에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3조의50(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국가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동 혁신과 공간의 연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 인프라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모빌리티 미래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

제73조의51(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 ① 도지사는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거점 육성을 위하여 도내 관할구역 내의 복수의 산업단지, 연구단지 및 실증구역 등을 연계한 강원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이하 이 조에서 “클러스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클러스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73조의50에 따른 모빌리티 미래도시 및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등이 연계된 산업단지

2. 자율주행자동차·커넥티드카, 친환경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드론, 배터리, 이동 로봇,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서비스(MaaS) 등 미래모빌리티 분야의 기술개발 및 실증 인프라 구축
3. 부품·소재·완성품 제조기업 간 공동 개발·생산·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및 스마트 제조혁신 체계 구축

4.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국제 품질인증·표준화 지원

② 국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규제특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업 이전, 시설 구축, 용도지역 변경 등에 관한 인허가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클러스터의 지정, 기업 유치, 인센티브 제공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통합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⑤ 국가는 클러스터와 관련된 재정·금융 지원 및 규제 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3조의52(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규제특례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같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항·제5항, 제49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3.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제10조의3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제73조의53(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 장관은 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3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 운영 및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73조의54(녹색융합클러스터 구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녹색산업등 진흥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1.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2. 태양광 사용후 패널 자원순환 클러스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②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녹색융합클러스터 및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녹색산업등(이하 이 조에서 “녹색산업등”이라 한다)의 연구 및 기술 개발

2.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창업·사업화 촉진 및 시장 진출 지원

3. 녹색산업등 관련 기술 등의 실증화

4. 그 밖에 녹색산업의 육성 및 집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3조의55(지역투자공사 설립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지역 내 투자자본 조성 및 벤처·신산업 금융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투자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역투자공사가 도내 관할구역 내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3조의56(학교·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① 강원자치도에서 학교·공공급식 등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은 강원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단순 처리품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공공기관은 강원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급식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품질 좋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이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3조의57(귀농어·귀촌 활성화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귀농어·귀촌 청년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귀농어·귀촌 청년의 농어촌 취업 및 창업 지원
2. 귀농어·귀촌 청년의 정주여건 지원
3. 귀농어·귀촌 청년의 능력개발 및 생활 안정 지원

제73조의58(청년지원정책 재정지원 특례) ① 도지사는 지역의 청년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주거 및 문화 향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확충
2. 청년 주거공간 지원
3. 기초생활인프라 및 문화·집회 시설 확충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청년유출을 막고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3조의59(대중교통 운영 지원)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도민복리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내 관할지역을 걸쳐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지사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대중교통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강원자치도 관할구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경유하는 철도 노선에 대해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원인제공자 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

1.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한 경우 또는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유지하여 발생하는 경영손실

3.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하는 비용

④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지역 간 이동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도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3조의60(교통물류거점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강원자치도 관할구역 내에 교통물류거점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교통물류거점에 항만이 포함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물류거점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3조의61(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특례) ①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같은 조제1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청년 및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분양 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사항
3.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재계약 거절에 관한 사항

제73조의62(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강원자치도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이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재원의 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이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다.

제73조의63(공항경제권 조성 및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는 도내 국제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항공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양한 경제활동 및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생태계(이하 “공항경제권”이라 한다)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공항경제권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강원자치도 및 공항운영자는 국제선 유치 등 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항공사업자에게 운항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3조의64(권역별 글로벌 의료관광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지역별 의료 자원 특성에 맞추어 다음 각 호의 글로벌 의료관광특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

1. 첨단의료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AI) 기반 정밀 의료, 중증 질환 치료, 뷰티(이용업·미용업과 피부관리, 건강관리 등 이와 관련된 서비스, 화장품·미용기기 등을 이용한 서비스,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물품 및 서비스)·성형

2. 한방치유권: 「의료법」에 따른 한방 의료 또는 재활 의학을 통한 치유
3. 산림치유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산림치유
4. 해양치유권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해양치유
5. 웰니스의료권: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치유농업자원,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치유관광자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통합·연계한 치유

③ 도지사는 글로벌 의료관광특구 내에 국제진료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 환자의 입국부터 진료, 요양, 관광, 출국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며 환자 및 보호자의 장기 체류 비자 발급을 위한 행정 편의를 제공한다.

제73조의65(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① 도지사는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점가 활성화 지원
2.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3. 주말시장의 지원
4.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해제
5.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지원

6. 청년상인의 육성

7. 빈 점포의 활용 촉진

8. 상권활성화 지원

9.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10.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도내 관할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강원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제73조의66(국유지·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특례) 정부와 도지사는 제73조의65의 시장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유지·공유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10년간 감면할 수 있다.

제73조의67(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특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의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시장·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기준을 해당 시·군의 조

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국제학교에 관한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제4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8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4. 제48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폐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를 폐쇄한 자
5. 제48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제학교의 재산을 해당 국제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한 자

② 제48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국제학교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제14조의2(주민자치 조직의 전문성 강화 및 사무국 설치)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사무국 또는 전담 사무 인력을 둘 수 있다.</p> <p>② 사무국의 구성, 인력 운영 및 사무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군 조례로 정한다.</p> <p>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u>&lt;신 설&gt;</u></p>	<p>제14조의3(도민 모니터링) ① 강원자치도의 도민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회의 입법과정과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의 정책 입안, 결정 및 집행과정 등을 감시·견제하기 위</p>

하여 그 활동 전반에 관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도민은 제1항의 모니터링  
활동을 위하여 도민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모니터링 활동과  
제2항의 도민모니터단의 구성  
과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④ 시민은 제1항의 모니터링  
활동을 위하여 시민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모니터링 활동과  
제2항의 시민모니터단의 구성  
과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2(혁신도시 개발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강  
원자치도의 혁신도시(「혁신도  
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  
도시를 말한다) 개발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 관할구  
역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신 설>

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다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의3(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강원자치도를 이전 대상지역으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강원자치도 관할구역 안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이주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수당의 지급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 인재채용 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이를 상향 적용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의4(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의5(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특례) ①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생활인구 중 도조례로 정하는 장기 생활인구(이하

“강원자치도 생활인구”라 한다)  
에 대하여 강원자치도 생활인  
구 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  
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강  
원자치도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  
보를 수집·등록할 수 있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현재 주민등록지

5. 통근·통학 등 정기적으로  
방문·체류하는 사유

6. 정기적으로 체류하는 직장·  
학교 등에 관한 정보(소재지  
등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  
원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개인정  
보 수집·등록·절차 등에 관  
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  
법」 등의 기준에 따라 도조례  
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강원

<신 설>

자치도 생활인구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  
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다.

⑤ 누구든지 업무·고용 및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  
람에게 강원자치도 생활인구  
등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20조의2(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  
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제29  
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  
항 및 제37조제1항 본문·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3(세율 조정에 관한 특  
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불구  
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도세 세율은 해당 세목 세  
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법」 제13조, 제13조의

<신 설>

<신 설>

2, 제15조, 제34조, 제14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세율은 가감 조정할 수 없다.

제32조의2(강원과학기술원 설립)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강원과학기술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원과학기술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4조의2(그린바이오산업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례)

① 강원자치도에서 그린바이오산업의 연구·실증·산업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수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수행할 수 있는 그린바이오산  
업 관련 데이터 업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의 표준화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의 생성, 수집, 보존 및 전송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의 공유, 공동 활용 및 거래

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플랫폼의 공동 활용 기반 구  
축

5.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데  
이터의 관리·활용을 함에 있  
어 국가 그린바이오산업 정책,  
데이터 정책, 표준, 보안체계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하  
며, 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의3(첨단바이오헬스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국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첨단바이오헬스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효율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예산의 집행, 인·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의4(수소제조설비 등 설치 특례) 강원자치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소저장소에 대한 구조 및 설치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의5(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① 국가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하고 강원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가 재생에너지 및 성장 유망산업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자립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에너지 자립도시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지능형 전력망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③ 도지사는 에너지 자립도시

<신 설>

의 조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의6(임대전용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에 지정되는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경우, 국가는 해당 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의7(산업단지 내 환경기초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또는 산업단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기초 시설 구축을 위하여 국가산단 등 산업단지의 부지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그 밖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환경기초시설을 산업단지 기반 시설로 본다.

② 도지사 또는 산업단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단지 지정권자·관리권자와 협의하여 관리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34조의8(노후거점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지원 특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강원자치도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 유희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이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우선하여 처리하거나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발전설비 등의 설치 및 구축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신 설>

제34조의9(벤처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강원자치도 소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벤처투자, 정책금융 및 보증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

<신 설>

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  
조합, 정책목적형 펀드에 대  
한 출자
2. 중소기업 융자제도 우대 및  
보증제도 수립·운영
3. 실증사업, 규제특례사업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한  
사업화 투자 및 후속투자 지  
원

제34조의10(인공지능 클러스터  
구성 특례) ① 도지사는 인공  
지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  
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거점, 기  
반시설, 재생에너지를 유기적으  
로 연계한 클러스터(이하 “클  
러스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클러스터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구축·  
확충 및 기능 고도화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2. NPU 등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시설 및 연계 시설

③ 국가는 제2항 각 호의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클러스터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연계된 전문인력 양성 및 글로벌 인재 유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클러스터 내 시설 구축, 기업 이전 등 관련 사업은 국가 인공지능 정책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보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를 의제 처리하거나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의11(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 ① 국가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에너지 분야의

<신 설>

산업·기술·실증 인프라가 집적된 강원자치도를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도민의 인공지능 접근성 제고 및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험·공공서비스 확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과 강원자치도를 연계하는 통합 교통·물류·정보통신·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의12(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도지사가 「인공지능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에 대하여 인공지능집적단지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지사가 조성한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역에 효과

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의 전담기관 지정 시 도지사가 추천한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하여 전력·용수 등 기반인프라 시설을 수요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의13(인공지능 및 반도체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및 반도체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강원

<신 설>

자치도 관할구역 내에 인공지능 및 반도체 도시 실증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증지구에서 인공지능 및 반도체 기술을 실증하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제34조의14(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 활용의 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강원자치도 내 지역에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기술개발, 실증 및 사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역 내에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인공지능 학습·추론·검증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정제·결합·관리·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포함하는 공공 기반 데이터 관리·활용 플랫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축하고,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이 이를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인공지능데이터뱅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학습용·검증용 데이터의 구축 및 제공
2. 데이터의 비식별화, 익명화, 결합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처리 및 관리
3. 인공지능 기술개발·실증·사업화를 위한 데이터 접근 및 활용 지원
4. 인공지능데이터의 품질 관리, 표준화 및 신뢰성 확보

지원

④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도  
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은 「인  
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정책 및 관련 사업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지  
역 내에서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연계·협력 방식으로 운영한다.

⑤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의15(인공지능·에너지 융

<신 설>

합 특화산업도시의 연계 육성 및 지원)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인공지능 인프라와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문화 등에 전문화된 특화산업도시를 연계 육성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도모한다.

② 도지사는 첨단산업의 연계와 융복합 촉진을 위하여 3년마다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특화산업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1. 첨단전략산업 분야 관련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집적되어 있거나 집적할 계획이 있을 것
2.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한 연구·실증·생산 인프라 및 기업 지원시설이 구축되어 있거나 구축할 계획이 있을 것

3. 특화산업 생태계의 상호 보  
완성 및 연계 효과가 인정될  
것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  
정된 지역에 대하여 「국가첨  
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  
호에 관한 특별법」 및 「소재  
·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  
른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우선 검토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강원자치도는 제2항  
의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  
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화산업도시 간 공동 연구  
개발 및 실증사업의 기획·조  
정

2. 특화산업도시 간 인프라, 데  
이터, 자원의 공동 활용 체계  
구축 및 공동활용 활성화

3. 기업 유치 및 투자 유치 통  
합 지원

4. 인력 양성 및 교류 프로그램

<신 설>

<신 설>

운영과 공동 홍보

5. 특화산업도시 간 교통의 연계

6. 그 밖에 특화산업도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4조의16(자율주행자동차 시범 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군·구의 신청을 받아 강원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4조의17(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할 구역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신청하는 경

<신 설>

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지역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단지·지구·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의18(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의19(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도지사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른 항공우

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우주산업의 육성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강원자치도 관할구역 내 우주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우주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자금 대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우주 국가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시설운영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국가와 협력하여 우주산업 정책을 연계하고, 강원자치도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지

<신 설>

원하여야 한다.

제34조의20(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도지사가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로 우선 지정하고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의21(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에 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과학기술 역량증진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회에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역조직 설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지역 조직이 설립될 수 있

<신 설>

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조직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의 체류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모두 해당하는 외국인 중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한 영주자격의 요건의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강원자치도에 있는 대학에서 첨단지식산업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할 것
2. 연구경력, 실적 등이 우수할 것
3. 강원자치도에 있는 연구기관·기업 등에 취업 또는 창업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첨단지식산업 분야는 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례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마다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1항의 계속 적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계속 적용여부에 관한 결정을 따라야 한다.

제44조의3(다문화학생 등을 위한 지원) ① 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의 교육과정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다문화학생 등을 위한 교육과정·지역특화 교육과정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및 제43조제

2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중학교 입학 전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촌학교 전·입학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④ 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병설하거나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특수학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학교를 병설하려는 경우 학교의 규모 시설·설비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5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

제45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  
-----  
국가교육위원회와 미리 협의한 후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

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신설>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초·중·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특례)

① 도교육감은 도내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는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학생의 선발 기준 등을 달리하는 특별전형(特別銓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

의2의 외국인학교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8조의 외국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은 제외한다)

4. 이 법의 외국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은 제외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에게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에게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활동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부모에게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8조의2(국제학교의 설립 등)

<신 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글로벌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1. 국가, 강원자치도 또는 시·군
2. 국내 법령 또는 외국 법령(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국제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48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48조의4(국제학교 설립계획의

승인) ① 제48조의2제1항제1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갖추어 설립계획에 대하여 도교육감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48조의2제1항제2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설립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국제학교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받은 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주요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의5(국제학교의 설립승인 등) ① 제48조의4에 따라 설립계획을 협의 또는 승인받은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하고자 하

<신 설>

<신 설>

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교육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제학교의 설립·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주요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학교의 설립 및 변경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8조의6(국제학교의 위탁운영 등) ① 제48조의2제1항제1호의 자는 설립한 국제학교의 운영을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같은 항 제2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국제학교는 국제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로 본다.

② 제48조의5제1항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승인을 받은 법인(이하 “국제학교법인”이라 한다)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운영을 제48조의2제1항제2호의 자에게 위탁할

<신 설>

<신 설>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제 학교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8조의7(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① 국제학교법인은 설립승인을 받은 국제학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승인일부터 3주 안에 「민법」 제50조에 따른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8조의8(국제학교의 운영 등)

①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하되, 국어 교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입학하는 외국인에게는 국

어 교과와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제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학년도,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등 수업에 관한 사항

2. 학년제, 수업연한 등에 관한 사항

3. 국제학교의 교과용 도서 사용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입학자격, 입학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국제학교의 학교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의 평가, 평가의 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인 국공립 국제학교의 수업료에 관한 사항

은 「유아교육법」 및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다.

⑤ 국제학교의 장은 초등학교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  
을 수학(受學)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해당 학  
교 과정에 입학(재입학·전학  
· 편입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⑥ 국제학교 졸업자의 학력인  
정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  
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⑦ 국제학교의 학생은 국제학  
교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합리  
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아서  
는 아니 된다.

제48조의9(다른 법률의 적용) ①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징  
계, 학교생활기록, 학생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유  
아교육법」 제14조, 「초·중등  
교육법」 제18조, 제25조제1항  
및 제30조의6을 적용한다. 다

<신 설>

<신 설>

만, 학생생활기록의 구체적인 작성과 그 방법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에 알맞은 방법으로 학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법」 제31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라 휴업명령·휴원처분 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제48조의10(국제학교의 교원임용 등) ①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의 자격과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제학교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이 설립·운영하는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임면, 복무, 신분보장·사회보장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54조의2,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부터 제66조의4까지 및 제70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에게는 같은 법 제56조,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학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국공립 국제학교의 교원에 한정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35조 각 호의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국공립 국제학교의 장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국제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⑥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국제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국제학교의 장은 내국인 교원과 외국인 교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의11(국제학교의 회계처리 등) ① 국제학교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처리는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을 따른다.

③ 국제학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④ 국제학교법인의 기관과 해

<신 설>

산·합병은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국제학교법인의 기관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제48조의12(「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국제학교의 지도·감독, 재정지원 및 이에 따른 조치, 국제학교의 폐쇄승인 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학교법인”은 “국제학교법인”으로, “외국교육기관”은 “국제학교”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국제학교의 장”으로, “교육부장관”은 “도교육감”으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학과”는 “학교”로 본다.

<신 설>

제48조의13(국제학교 학생 선발의 특례 등) ① 국제학교의 장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대상자를 입학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도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48조의14(국제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제학교의 장은 국제학교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또는 수업료 감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방안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48조의15(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 ① 국가와 강원자치도는 지역산업과 연계된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수 인력의 유입 및 체류 지원을 위하여 주거,

<신 설>

교육, 문화 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의16(지역전략산업 분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인공지능, 미래 모빌리티 등 지역의 특화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내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정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학교의 지정 또는 운영에 관한 특례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지역 특화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역전략산업 분야 특화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교육감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④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 및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자치도 관할 구역에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공동으로 입주할 수 있는 교육·연구 복합시설 및 캠퍼스(이하 “지역산업혁신 캠퍼스”라 한다)를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⑤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지역산업혁신 캠퍼스의 조성·운영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대학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 운영,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학교 특례 운영 요청, 대학 및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운영, 관계 기관 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17(대학 경쟁력 강화) 강원자치도 내 대학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활성화

<신 설>

화 및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초·중등 학교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48조의18(학생 모집정원에 관한 특례) ① 도교육감은 강원 자치도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정원을 정함에 있어 지역의 인구 변동, 산업 수요,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 모집정원 운영을 위하여 매년 학생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 모집정원의 탄력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48조의19(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해당 학교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  
교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  
른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구조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조개선 명령을 위한 구  
체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  
다.

<신 설>

제48조의20(대학 주도 평생교육  
· 직업교육 특례) 도지사 와 도  
교육감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특  
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  
등학교, 대학, 산업계, 관계 행  
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  
고,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정책  
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48조의21(대학 및 지역 동반성  
장 지원 특례) ① 국가는 강원  
자치도 설치 및 운영에 따라  
대학의 교육·연구·산학협력  
기능이 지역 발전과 연계·확  
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대학

<신 설>

과 협력하여 지역 전략산업, 초  
광역 협력사업 및 국가 정책사  
업과 연계된 고등교육 혁신계  
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8조의22(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  
용촉진 특례) ① 도지사는 소  
외된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  
들에게 지방공기업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은 지역 전략  
산업에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  
리 창출을 촉진하고 학력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  
업의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확충

2. 고등학교 졸업자 맞춤형 고  
용 지원 및 채용 확대

3. 능력 중심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4.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후 경  
력개발 지원

②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  
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  
3호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마  
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  
정자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  
업예정자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  
5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졸  
업자 및 졸업예정자

5.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  
력을 인정받은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기업으로  
서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정규직 신규 채  
용 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  
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  
업

2. 강원자치도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는 지역 전  
략산업 소속 기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자치도 관  
할구역에 조성된 산업단지 입  
주기업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업

4. 그 밖에 강원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  
용 노력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  
는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  
다.

1. 고등학교 졸업자 신규 채용  
에 따른 인건비 일부 지원

2. 직업훈련 및 자격취득 비용  
지원

3.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

4. 강원자치도 공공조달 입찰  
시 가점 부여

<신 설>

5. 그 밖에 강원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지원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용 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기업을 포상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역량 강화 및 직장 적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현장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취업 후 계속교육 및 학위 취득 지원

3. 직장 내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고등학교-기업 간 채용연계 협약 체결 지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8조의23(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 글로벌 인재 유치 지원)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 지역 전

략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공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국제행사 개최

2. 해외 현지 취업박람회 및 정부 간 협력 등을 위한 사절단 등의 운영

3.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예산 및 지원인력의 확보

4. 그 밖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범정부 협력 지원 활동

② 강원자치도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취업과 연계한 교육 훈련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지역 내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신 설>

3. 그 밖에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제48조의24(인재 고용 지원 및 촉진) ① 도지사는 미래신산업 분야의 인재 유입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대학·연구소와 기업 간의 채용 연계형 인턴십 및 현장 실습 프로그램 운영

2. 미래신산업 분야 취업 희망자에 대한 맞춤형 직업 훈련, 경력 설계 컨설팅 및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

3. 지역 인재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임금 보조 또는 사회보험료 지원

4. 그 밖에 인재의 고용 촉진 및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이 시행하는

<신 설>

각종 사업이나 공사·물품 구매입찰 하는 경우 지역 내 미래신산업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제48조의25(우수 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

① 도지사는 미래신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핵심 인재에 대하여 일정 기간 무상 임대하는 등 주거비 지원정책을 시행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

<신 설>

제1장 농업·식품산업·임업 등  
진흥

<신 설>

선 공급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지원 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의26(우수 인재 정주를 위  
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 도지  
사와 도교육감은 미래신산업단  
지 또는 연구개발특구 인근에  
우수 학교를 유치하거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지원금  
을 지원할 수 있다.

제1장 농업·식품산업·임업·수  
산업 등 진흥

제51조의2(농촌융복합산업 사업  
자의 인증에 관한 특례) ① 도  
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 거주  
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촌융복합  
산업 사업자의 인증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추천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신 설>

항에 따라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제51조의3(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동물보호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물의 보호·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2. 인증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
3.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자문 및 판촉
4.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해외시장의 진출·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홍보활동 및 투자유치

<신 설>

<신 설>

5. 그 밖에 인증농장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56조의2(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특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자체적으로 국가 지정 수준에 준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7조의2(수산물발전기금 지원 특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 유통 발전 협의회를 통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기금운용 시, 강원 자치도 수산업의 지속적인 영위와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 적체물량 해소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수산물 정부 비

<신 설>

축·수매자금 지원

2. 수산물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지원

3. 그 밖에 어업인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7조의3(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고, 선도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보에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도지구 지정 및 선도지구 조성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선도지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선도지구를 지정한 경우 수산업 기반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 수산업 관

<신 설>

련 연구개발, 스마트 수산업 교육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7조의4(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특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40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구역 내의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57조의5(해양공간관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특례) 「해양공간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 용도 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해양수

<신 설>

산부장관의 권한은 강원자치도 관할 해역에 한하여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57조의6(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① 「연안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호, 제25조,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 제28조제3항,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② 「연안관리법」 제5조제6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제4호, 같은 조제5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33조제2항, 제34조제4항,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이양된 권

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57조의7(국가어항 지정 및 시행에 관한 특례) 도지사가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어항의 신규 지정을 요청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개발할 수 있다.

<신 설>

제57조의8(지방어항 지원에 관한 특례) 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지방어항에 대하여 국가 등이 계획하는 해양수산 정책 등 연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상어항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57조의9(섬 주민 물류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강원자치도 관내 섬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신 설>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7조의10(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및 해양에너지 수익의 주민배당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갯벌·해조류 등 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사업과 해상풍력 등 해양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연계하여 그 수익이 지역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전력 판매 수익금 또는 탄소배출권 거래 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게 정기적인 이익배당금(이하 이 조에서 “바다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바다연금의 안정적인 재원 조성을 위하여 발전사업자, 탄소흡수원 인증사업자, 주민 조합 등이 참여하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바다연금의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지급액 및 주민참여 비율 등 세부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57조의11(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특례)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기 전에 미리 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지역의 산업 발전계획, 어업권의 손실 보상 및 지역주민 수용성, 환경·경관적 특성 등을 반영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 설>

제57조의12(해상풍력 발전지구 내 면허어업 및 어업허가 특례) ① 도지사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산

업과의 상생공존을 위하여 해  
상풍력 발전단지로 지정된 공  
유수면에서 「양식산업발전  
법」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설치·운영에 지장  
이 없는 범위에서 양식업(면허  
에 한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상풍력 발전단  
지 내 공유수면에서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  
업법」에 따른 어업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  
식업 및 어선어업의 허용 기준,  
대상 해역, 어업의 종류, 안전  
관리 및 조업 제한에 관한 사  
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다.

<신 설>

제57조의13(항만지정 및 개발 특  
례) ① 도지사는 「항만법」  
제3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항만을 국  
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

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항만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항만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항만시설 수급전망, 항만물동량 수요 예측 등 급격한 경제상황 변동이 있거나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관리·운영 등이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신속히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지구·발전지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강원자치도 내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신 설>

해상풍력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57조의14(수상태양광 산업 육성)

① 국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수상태양광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수상태양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실증사업, 사업화 지원, 전력계통 연계 제도 개선 및 관련 인허가 절차의 합리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상태양광 등을 추진할 때 지역주민의 참여와 수익의 일부가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신 설>

제57조의15(수상형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특례)

① 도지사는 댐 구역, 저수지 및 담수호 등의 수면에 부유(浮遊)하여 설치

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이하 “수상형 태양광 발전설비”라 한다)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지 및 설치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경관 보호에 관한 사항

2.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부합하는 설비의 안전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 및 안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기준에 적합하게 수상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신고·해제(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신 설>

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제57조의16(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및 제23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산업법」 제46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어업(근해어업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산업법」 제46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어업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57조의17(낙시어선의 이용에 관한 특례) 「낙시 관리 및 육

<신 설>

성법」 제25조제1항·제4항, 제38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의18(유어장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8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른 유어장(遊漁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어장의 일부를 유어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지

<신 설>

정기준, 유어행위, 수산동식물  
의 포획·채취방법·수량 및  
유어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  
어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유어  
장을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면 그 지  
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8조의2(선박등록특구의 지정)

① 국가는 선박등록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강원자치도 내  
무역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  
한다.

②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선박으로서 제1항에 따  
른 무역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조세특  
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  
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신 설>

재산세,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및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강원자치도는 제1항에 따라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국세 및 지방세 관계법령과 지방세 감면 등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여야 한다.

④ 선박등록특구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3(글로벌 물류경쟁력 확보 시책수립 등) ① 정부는 강원자치도가 복합물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운·항공·도로 간 물류체계를 효율적·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국내·외 물류체계 및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활동의 촉진,

<신 설>

제조·유통산업 등과의 연계강화 등 글로벌 물류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8조의4(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일정지역을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을 요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강원자치도의 공항·항만과 그 배후지에 대한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공항·항만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④ 정부는 국제물류진흥지역 내에서의 관세절차 및 신속한 환적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용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58조의5(지방관리항만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가 관리하는 지방관리항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7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역균형발전, 도서·벽지 주민의 교통·물류 편의 증진

에 기여하는 경우

2. 해상풍력 등 국가 대규모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형 재난 발생에 대한 복구 및 회복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항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의 대상, 비율,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8조의6(자유무역지역 연계 항만배후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제58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지정하는 자유무역지역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는 해수부장관에게 「항만법」 제45의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타당성과 발전가능성, 지역 특수성과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제58조의7(외국인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원 특례)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농어  
업 및 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  
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된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  
본법」 제5조 및 제6조의 계획  
에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환경  
및 주거 여건 실태 조사

2.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3.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의료 지원 및 자녀 보육·교  
육 지원 방안

② 도지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  
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농  
어촌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전  
용 기숙사 또는 공동 숙소를  
건립하거나 개량·보수하는 경  
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강원자치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 및 체류 자격 변경 요건의 완화

2.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 및 재입국 절차의 간소화

3. 강원자치도 내 특정 구역 또는 산업 분야에 한정하여 취업 활동을 허가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의 쿼터 확대

④ 도지사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언어 소통 및 갈등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의

<신 설>

교류 활성화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8조의8(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① 강원자치도는 정책펀드의 기획·운용, 공공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개발, 전략사업에 대한 투자 등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출자하여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강원자치도는 지방소멸대응, 지역혁신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고 출자할 수 있다.

<신 설>

제58조의9(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는 강원자치도 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특구, 산

<신 설>

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국가 지원 한도와 분담 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제58조의10(기회발전특구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지사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강원자치도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58조의11(산업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강원자치도 내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58조의12(지능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3조제1항·제4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선도사업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경우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거점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제58조의13(기업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연대협력체 구축 특례) ① 도지사는 지역 전략산업의 연대·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업연대협력체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합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 연구개발(R&D), 핵심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상호  
공유·활용

2. 생산시설·장비의 공동 투자  
·이용 및 부품·원자재의 상  
호 수급 체계 구축

3. 공동 브랜드 개발, 온라인·  
오프라인 판로 개척 및 공동  
마케팅·인증 획득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산  
업연대협력체를 지정하여 통합  
지원하는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  
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분  
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  
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40조제3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산업연대협력체의  
신청, 지정, 인센티브 제공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단일

창구에서 일괄 처리하며, 정부는 관련 인허가 및 규제 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58조의14(기술개발제품의 우선 구매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신 설>

제58조의15(중소기업 종사자 공동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정부와 도지사는 중소기업 종사자의 복지 향상 및 지역 인재 유치·정착을 위하여 지역 기업, 소상공인, 서비스업체 등이 참여하는 광역 단위 공동복지사업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동복지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중

양회, 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동복지사업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카드를 발행·운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동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강원자치도 중소기업 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58조의16(소상공인에 대한 국가 종합지원 특례)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 설치로 인하여 경영환경의 변화, 상권 구조의 재편 및 지역 간 경제여건 격차 등으로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

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기존 소상공인 지원 제도와의 연계 범위 내에서 금융적·정책적 지원 특례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 및 같은 조 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산림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산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3. 소상공인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제 취약지역

④ 국가는 강원자치도 설치 이전과 비교하여 소상공인의 금융·경영 여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는 강원자치도 지역 내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유통·할인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확대·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에 따라 추진하며, 필요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58조의17(지역역세권 활성화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도

<신 설>

지사는 역사와 역사주변지역을 연계하여 역사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경제활동 및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철도사업자(「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를 말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철도경제권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강원자치도 및 철도사업자는 철도경제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복합환승센터구축을 요청하는 경우 기본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61조의2(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특례)

<신 설>

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기후위기적응센터(이하 “적응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적응센터는 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③ 도지사는 적응센터에 대하여 수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도지사는 적응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61조의3(탄소중립 지원센터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지정·운영 중인 종전의 강원자치도 관할 내의 탄

<신 설>

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1조의4(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 ① 강원자치도는 정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이하 “특별지구”라 한다)로 지정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지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환경

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된 지역으로서 「기후위  
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  
색성장 기본법」 제48조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  
춘 지역

3. 그 밖에 국가기후위기대응위  
원회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  
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  
소하기 위하여 특별지구 지정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강원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하는 등의 사  
유가 있는 경우 「기후위기 대  
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특별지구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  
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법」 제4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국가는 특별지구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61조의5(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지상설치 지원)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강원 자치도 관할구역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68조의2(댐수입금 등의 공개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강원 자치도에 건설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에게 해당 다목적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수입금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댐사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사용

<신 설>

권자인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징수한 사용료

2.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용료

3. 발전판매(發電販賣) 수입금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 등의 자료 제출의 방법, 시기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3(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등의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건설된 총저수량 10억톤이상의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댐사용권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재원과 별도로 해당 다목적댐에서 발생하는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및 전전년도 생활용수·공업용수 판매를 통한 수입금의 100분의 20을 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

기금에 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을 조례로 설치·운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해당 다목적댐 주변지역 관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그 밖에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68조의4(오염총량관리제 지역개발부하량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수립·승인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신 설>

에 따른 지역개발계획부하량의 지역개발사업별 할당 시 지역개발사업의 승인·허가 등의 기관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협의하는 대상사업은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정한다.

제4장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의  
진흥 등

제73조의2(문화예술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

<신 설>

<신 설>

2.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확충·정비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개발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예술의 발굴·진흥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의 교류증진과 세계화에 관한 사항

7.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8.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에 따른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가는 강원자치도 문화의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신 설>

<신 설>

문화진흥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진흥계획 중 제2항제7호에 따른 사항이 반영된 부분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73조의3(지역문화 진흥거점 조성)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13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 자치도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3조의4(문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이 집적된 지역
2. 군사시설 이전이 확정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

<신 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내 교양시설이 설치된 지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3조의5(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평가 특례) ①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의2에도 불구하고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토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73조의6(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객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신 설>

가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특구 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3조의7(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향토문화의 발굴·유지·보존 및 계승·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강원자치도는 향토문화관광지구 조성을 위한 도로·용수 시설·하수시설·통신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73조의8(문화·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국제회의시설·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대규모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문화·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73조의9(세계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국가는 강원자치도가 세계 한류 역사문화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73조의10(역사문화특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역사적 정체성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역사문화 거점으로서 강원자치도 내 일정 지역을 역사문화특구로 지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특구를 지정할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역사문화특구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국가유산 및 전통문화의 체계적 보존·전승
2. 역사문화 자산과 그 정신적 가치의 보호 및 활용
3. 무형유산·전통예술·민속문화의 집적 및 활성화
4. 역사문화 기반 관광·교육·연구 기능의 강화

④ 역사문화특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3조의11(역사문화특구에 대한 특례) ① 강원자치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신 설>

법률」,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특구의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 자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강원자치도는 역사문화특구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익계약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역사문화특구에 적용되는 특례의 범위와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12(인공지능-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에 과학기술·디자인·문화예술·인문사회 등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복합기술의 연

<신 설>

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단지 내에 차세대 이동통신망, 초고성능 컴퓨팅 센터, 인공지능 창작 전용 데이터 센터 등 차세대 디지털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단지에는 실감형 콘텐츠,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 게임, 영상, 웹툰, 애니메이션, 미래형 문화기술 관련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개발하는 인공지능 융합 콘텐츠 서비스에 대하여 실증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동안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문화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신 설>

·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3조의13(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 특례) ① 도지사는 콘텐츠 산업 육성과 국제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및 건폐율·용적률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한류 콘텐츠 복합 공연시설 등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립 등에 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 영상 제작 시설 등 문화 산업 관련 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건립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는 해당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단위개발사업지구로 보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사업시행자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제73조의14(연안 관광개발을 위한 환경 규제 특례) ① 도지사는 연안의 고유한 생태·문화를 활용한 관광 개발을 위하여 친환경 관광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 관광 진흥지구 내 개발 사업의 환경성

<신 설>

및 국가유산 사전영향협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 이익의 일정 비율을 환경복원 및 생태계 보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5장 생활환경 개선 및 경제진흥 등

제73조의15(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강원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도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73조의16(공공의료재단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에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및 취약지역 의료 접근성의 실질적인 개선과, 필수·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지속적 공급 체계 구축하는 등 광역 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의료재단 설치·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공공의료재단의 설치, 조직 및 운영, 관련 민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3조의17(공공산후조리원 조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관할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출산율 제고와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강원자치도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시설 확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위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3조의18(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강원 자치도 관할구역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응급의료 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 지원
3. 응급의료 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 지원
4.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구축 및 운영 지원

<신 설>

제73조의19(공공의료 인프라등 확충에 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공공의료 인프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인력·사업을 말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책임의료기관과 그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

비·인력·연계체계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축·증축·이전, 노후시설 개보수 및 의료환경 개선 사업
3.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중증·응급·분만·소아·정신 의료 등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권역별 전문의료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재난·응급 의료, 필수의료 제공,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병원 및 관련 기반시설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안정화 및 장비·인력 확충 기반사업

6.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장기 근무 유도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교육·연구·생활기반 등 지원 사업

7. 「병역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료취약지에 편입·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 인력

8.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도내 소재 지역암센터의 시설·설비 등의 설치·확충, 증축·개축, 리모델링 등

②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의료 인프라 등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책임의료기관의 기능 강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의

료취약지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도내 관할 지역에 제공되던 응급·필수·공공 의료 관련 국가의 재정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국가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 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의료 취약지의 병원 운영비 지원과 지역 의사·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와 법인을 설립하

<신 설>

여 보건의료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종합병원 개설과 연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73조의20(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 ① 강원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필수의료복지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의료원은 제1항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료원은 업무·고용 또는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기부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이

<신 설>

익 또는 그 밖에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21(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73조의20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73조의20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신 설>

<신 설>

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22(인공지능 약자 보호 및 교육) ① 국가는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음성, 동작, 뇌파 등으로 제어 가능한 불편함이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인공지능 인터페이스를 보급할 수 있다.

② 강원자치도 내 모든 공공시설과 대중교통에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수어 통역 및 시각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73조의23(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경찰관서, 교육기관 및 관련 민간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폭력학대 신고대응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폭력학대신고 대응센터의 조직, 인력 운영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73조의24(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특례)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특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 지원, 행정 지원 및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신 설>

제73조의25(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출산장려 및 인구부양, 돌봄 등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신 설>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제도의 신설이나 변경에 대한 협의절차 간소화를 요청할 수 있다.

제73조의26(강원자치도 돌봄특구 지정) ① 도지사는 영유아 및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돌봄을 위한 강원자치도 돌봄특구(이하 “돌봄특구”라고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돌봄특구 내에서 시행되는 돌봄사업과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돌봄 간의 연계·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돌봄특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돌봄특구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④ 도지사는 기존 돌봄사업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돌봄특구 운영에 필

<신 설>

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3조의27(특화형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1인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청년층, 장애인, 고령자 등 입주자의 특성 및 주거 수요에 대한 맞춤형 공간구성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에 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이하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를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그 밖에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도민의 복리 증진 및 균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임대조건,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기준, 운영기관의 선정·평가 및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제73조의28(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관한 특례) 산업통상부 장관은 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제73조의29(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 장관은 도지사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력(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포함한다)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폐수·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연결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신 설>

5. 그 밖에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설

제73조의30(반도체·방위산업 연  
계 신산업화 지원)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에 반도체 및 방위산  
업과 연계한 신산업화를 촉진하  
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반도체, 방위산업 연계 신산  
업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강원자치도가 반도  
체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반도체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내 관  
할구역에 소재한 연구기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73조의31(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 ① 국가 및 도지사는 국  
방특화 클러스터의 확대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방산업 관련 기업

<신 설>

및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자금 대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국방특화 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국방산업 정책을 연계하고, 강원자치도의 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지원하여야 한다.

제73조의32(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1. 강원자치도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강원자치도 푸드테크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발전 전망
3. 강원자치도 푸드테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4. 강원자치도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5. 강원자치도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강원자치도 푸드테크산업 발  
전을 위한 창업 지원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7. 그 밖에 강원자치도 푸드테  
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매년 푸드테크산  
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73조의33(푸드테크 혁신클러스  
터 지정) 국가는 「푸드테크산  
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  
2항제8호 및 제14조에 따른 푸  
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강원자  
치도에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제73조34(푸드테크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  
고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  
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관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제73조35(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정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신 설>

제73조36(푸드테크산업 규제개선 특례)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제73조의37(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내 관할구역 내 농업의 현대화와 경쟁력 강

화를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이 조에서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하거나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도지사”로,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 본다.

③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육성지구를 지정한 경우 농업기반 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개발, 스마트농업 교육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

<신 설>

원을 할 수 있다.

제73조의38(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을 할 때 해양치유산업의 광역적 연계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지역이나 복수의 지역을 하나의 해양치유지구로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복수의 지역이 하나의 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지사는 각 지역별 자원 특성을 고려한 기능 분담 및 연계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73조의39(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의 선진화 및 지역별 유통망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내 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강원자치도의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사용료
3. 기타 기부금 및 후원금 등

<신 설>

③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도매 시장, 공판장 및 종합유통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정책 및 지원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3조의40(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 조성 특례)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하여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를 지정 및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및 지원을 총괄하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73조의41(인구감소지역 관광산

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농촌관광자원, 해양관광자원 등 특화 관광자원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관광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유원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단지 조성사업을 인구감소지역 내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신 설>

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42(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 도지사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 및 조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분석·검토한 후 추진할 수 있다.

<신 설>

제73조의4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지사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제73조의44(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국가의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와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 도내 일정지역을 강소형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이 조에서 ‘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라 한다) 조성할 수 있다.

1. 우수 연구인력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定住)가능성

2.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의료기관의 집적·연계 정도

3. 도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협력 정도

4. 부지 확보의 용이성, 접근성

5. 첨단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

6. 도내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또는 해외수출 실적 등

7. 지역에 조성된 바이오, 의료산업 기반 및 인프라 구축 정도

8. 첨단의료복합단지로서의 발전가능성

9.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개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의 기본 방향과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첨단의료산업진흥지원조직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의료연구개발기관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의료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의료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7.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성과의 활용 및 전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의료연구개발 활성화 및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과 규제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신 설>

<신 설>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에 관한 특별법」 제3조를 적  
용한다.

④ 국가와 강원자치도는 제1항  
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  
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  
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3조의45(혁신형 의료기기 지  
원 특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  
8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3조의46(공공기관의 입찰참가  
자격 기준 등에 관한 특례)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강원  
자치도 내에서 발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  
여 도지사는 계약처리의 기준  
과 절차, 입찰참가 자격 기준  
등의 적용을 달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정책사업 중 지방비 투입사업

2.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3.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 지역발전에 기여 등 지역의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사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 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등을 달리 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계약의 종류, 목적물, 사업명, 장소, 사업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강원자치도와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처리의 기준과 입찰참가 자격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하여 제76조의 발전

<신 설>

협의회에서 미리 협의를 할 수 있다.

제73조의47(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에 관한 특례) ① 국가와 강원자치도는 「약사법」 제44조의2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약사법」 제4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경영할 것
2. 6시부터 24시까지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출 것
3. 「약사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할 것
4.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위해(危害)의약품 판매를 차

<신 설>

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제73조의48(창업 집적 시범지구  
의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창  
업 생태계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  
집적 시범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창업 집적 시범지  
구 내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73조의49(미래산업 산학협력  
촉진)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  
산업기술 발전, 인재 양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  
을 갖춘 지역을 산업계와 대학  
간의 협력(이하 “산학협력”이라  
한다)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  
다.

1. 산학협력 등을 영위하는 기  
관과 그 지원 시설 등이 집단  
적으로 입주하였거나 입주하  
려는 지역
2. 산학협력 관련 투자 및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거나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산학협력 선도지구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②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학협력 선도지구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2.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3.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4.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 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5. 그 밖에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3조의50(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국가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동 혁신과 공간의 연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첨단 모빌

<신 설>

<신 설>

리티 산업과 인프라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모빌리티 미래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  
제73조의51(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

① 도지사는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거점 육성을 위하여 도내 관할구역 내의 복수의 산업단지, 연구단지 및 실증구역 등을 연계한 강원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이하 이 조에서 “클러스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클러스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73조의50에 따른 모빌리티 미래도시 및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등이 연계된 산업단지
2. 자율주행자동차·커넥티드카, 친환경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드론, 배터리, 이동 로봇,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서비스(MaaS)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개발 및 실증 인프라 구축
3. 부품·소재·완성품 제조기업 간 공동 개발·생산·공급

망 협력 네트워크 및 스마트  
제조혁신 체계 구축

4.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국제 품질인증·표준화 지  
원

② 국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대하여 같은 법 제  
12조에 따른 규제특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같은 법 제17조에 따  
른 전문인력 양성을 우선적으  
로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  
원할 수 있다.

③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업 이전, 시설 구축, 용  
도지역 변경 등에 관한 인허가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  
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  
니하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클러스터의 지정,  
기업 유치, 인센티브 제공 및

<신 설>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통합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⑤ 국가는 클러스터와 관련된 재정·금융 지원 및 규제 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3조의52(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규제특례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하여 강원 자치도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같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

<신 설>

조제1항·제4항·제5항, 제49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규제 특례 신청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3.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제10조의3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신청 등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제73조의53(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공급망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3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 운영 및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73조의54(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녹색산업등 진흥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신 설>

1.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2. 태양광 사용후 패널 자원순환 클러스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②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녹색융합클러스터 및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녹색산업등(이하 이 조에서 “녹색산업등”이라 한다)의 연구 및 기술 개발

2.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창업·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 지원

3. 녹색산업등 관련 기술 등의 실증화

4. 그 밖에 녹색산업의 육성 및 집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신 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3조의55(지역투자공사 설립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지역 내 투자자본 조성 및 벤처·신산업 금융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투자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역투자공사가 도내 관할구역 내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73조의56(학교·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① 강원자치도에서 학교·공공급식 등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은 강원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단순 처리품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공공기관은 강원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급식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품질 좋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이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3조의57(귀농어·귀촌 활성화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귀농어·귀촌 청년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귀농어·귀촌 청년의 농어촌 취업 및 창업 지원
2. 귀농어·귀촌 청년의 정주여건 지원

<신 설>

3. 귀농어·귀촌 청년의 능력개발 및 생활 안정 지원  
제73조의58(청년지원정책 재정지원 특례) ① 도지사는 지역의 청년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주거 및 문화 향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확충
2. 청년 주거공간 지원
3. 기초생활인프라 및 문화·집회 시설 확충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청년 유출을 막고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73조의59(대중교통 운영 지원)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도민복지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내 관할지역을 걸쳐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지사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대중교통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강원자치도 관할구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경유하는 철도 노선에 대해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원인제공자 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

1.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 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한 경우 또는 역의 철도 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

<신 설>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유지하여 발생하는 경영손실

3.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하는 비용

④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지역 간 이동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도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3조의60(교통물류거점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강원자치도 관할구역 내에 교통물류거점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교통물류거점에 항만이 포함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물류거점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신 설>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3조의61(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특례) ①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청년 및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사항
3.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신 설>

의3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재계약 거절에 관한 사항

제73조의62(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강원 자치도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이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재원의 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공항 이전주변 지역의 지원을 위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이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신 설>

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다.

제73조의63(공항경제권 조성 및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는 도내 국제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항공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양한 경제활동 및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생태계(이하 “공항경제권”이라 한다)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공항경제권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강원자치도 및 공항운

<신 설>

영자는 국제선 유치 등 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항공사업자에  
게 운항에 필요한 행정적·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3조의64(권역별 글로벌 의료  
관광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지역별 의료 자원  
특성에 맞추어 다음 각 호의 글  
로별 의료관광특구를 지정·육  
성할 수 있다.

1. 첨단의료권: 「인공지능 발  
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  
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인공지능(AI) 기반 정밀  
의료, 중증 질환 치료, 뷰티  
(이용업·미용업과 피부관리,  
헬스케어 등 이와 관련된 서  
비스, 화장품·미용기기 등을  
이용한 서비스, 그밖에 신체  
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  
료·물품 및 서비스)·성형

2. 한방치유권: 「의료법」에  
따른 한방 의료 또는 재활 의  
학을 통한 치유

3. 산림치유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산림치유

4. 해양치유권 : 「해양치유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해양치유

5. 웰니스의료권: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치유농업자원,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치유관광자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통합·연계한 치유

③ 도지사는 글로벌 의료관광 특구 내에 국제진료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 환자의 입국부터 진료, 요양, 관광, 출국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며 환자 및 보호자의 장기 체류 비자 발급을 위한 행정 편의를 제공한다.

## <신 설>

제73조의65(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① 도지사는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

다. 이 경우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점가 활성화 지원
2.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3. 주말시장의 지원
4.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해제
5.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지원
6. 청년상인의 육성
7. 빈 점포의 활용 촉진
8. 상권활성화 지원
9.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10.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도내 관할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강원자치도

<신 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3조의66(국유지·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특례) 정부와 도지사는 제73조의65의 시장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유지·공유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10년간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제73조의67(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특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의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시장·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기준을 해당 시·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83조의2(국제학교에 관한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설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제4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8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4. 제48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폐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를 폐쇄한 자
  5. 제48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제학교의 재산을 해당 국제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 진출한 자
- ② 제48조의12에 따라 준용되

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국제학교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